

하남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3028
----------	------

제출연월일 : 2025. 1. .

제출자 : 하남시장

1. 제안 이유

- 국가에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의 영예로운 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훈명예수당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국가보훈대상자 명예를 선양하고 예우를 다하고자 함.

2. 주요 내용

- 가. 보훈명예수당을 월 15만원에서 월 17만원으로 인상(안 제8조제1항제1호)
- 나. 상위법령을 잘못 인용하고 있는 조문 정비(안 제3조제8호)
- 다. 법제처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따른 문장부호, 띄어쓰기 등 정비 및 불필요한 규정 삭제(안 제7조, 안 제8조, 안 제11조, 안 제12조, 안 제15조)

3. 개정조례안: 덧붙임

4. 신구조문 대비표: 덧붙임

5. 관계법령 발췌서: 덧붙임

6. 예산수반 사항: 덧붙임

7. 입법예고 결과

- 가. 예고 기간: 2024. 11. 28.~2024. 12. 18.(20일간)
- 나. 의견 내용: 의견 없음

8. 부서협의 결과

- 가. 규제개혁 관련협의: 해당 없음
- 나. 성별영향 분석평가: 개선의견 없음
- 다. 부패영향 분석평가: 원안 동의

9. 관련부서: 경기도 복지정책과

하남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하남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8호 중 “제2조 2항” 을 “제2조제2호” 로 한다.

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조례가” 를 “조례로” 로 한다.

제7조의2 중 “범위내” 를 “범위” 로 한다.

제8조제1항제1호 중 “보훈명예수당 :” 을 “보훈명예수당:” 으로, “15만원” 을 “17만원” 으로 하고, 같은 항 제3호 중 “사망위로금 :” 을 “사망위로금:” 으로 하며, 같은 항 제4호 중 “복지수당 :” 을 “복지수당:” 으로 한다.

제11조제2항 중 “이후 중지사유 발생시” 를 “이후에 중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” 로 한다.

제12조제2항 전단 중 “아니 한” 을 “아니한” 으로, “의하여” 를 “따라” 로 한다.

제15조를 삭제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서명		복지정책과
입 안 자	부서장 직위·성명	복지정책과장 최 현 숙
	팀장 직위·성명	복지기획팀장 표 경 옥
	담당자 성명·전화번호	안 학 열 (790-5723)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3조(예우 및 지원대상) 예우 및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단체로 한다.</p> <p>1. ~ 7. (생 략)</p> <p>8.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조 2항의 적용을 받는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(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에 한함)</p>	<p>제3조(예우 및 지원대상)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~ 7. (현행과 같음)</p> <p>8. ----- ----- <u>제2조제2호</u>----- ----- -----</p>
<p>제7조(복지지원 등) 시장은 관계 법령이나 <u>조례</u>가 정한 범위 안에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복지지원을 할 수 있다.</p> <p>1. ~ 5. (생 략)</p>	<p>제7조(복지지원 등) ----- ---- <u>조례</u>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~ 5.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7조의2(한시적 난방비 지원) 시장은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<u>범위내</u>에서 한시적 난방비를 지원할 수 있다.</p>	<p>제7조의2(한시적 난방비 지원) -- ----- --- <u>범위</u>----- -----.</p>
<p>제8조(보훈명예수당 등 지급) ① 시장은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과 같이 보훈명예수당과 사망위</p>	<p>제8조(보훈명예수당 등 지급) ① - ----- ----- -----</p>

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.

1. 보훈명예수당 : 1인당 월 15만원

2. 삭 제

3. 사망위로금 : 1회 20만원 ,

4.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
복지수당 : 1인당 월 7만원

② (생 략)

제11조(지급중지의 결정) ① (생 략)

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중지는 사유발생 해당 월의 15일을 기준으로 하고, 16일 이후 중지사유 발생시는 해당 월까지 지급한다.

제12조(환수조치) ① (생 략)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환수를 하는 경우에는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을 반환할 사람이 기간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 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.

제15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.

1. 보훈명예수당: ----- 17만원

3. 사망위로금: -----

4. ----- 복
지수당: -----

② (현행과 같음)

제11조(지급중지의 결정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
----- 이후에 중
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-----
-----.

제12조(환수조치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
아니한 -----
-- 따라 -----
-----.

<삭 제>

관계법령 발췌서

1 「국가보훈 기본법」

[시행 2023. 6. 5.] [법률 제19228호, 2023. 3. 4., 타법개정]

- 제5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·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고,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-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에 따른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-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 또는 주민의 복지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·시행하거나 법령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에는 국가보훈대상자를 우선하여 배려하는 등 적극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.
-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사업에 필요한 재원(財源)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.

비 용 추 계 서

1.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

가.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

- 하남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조제1항제1호

나. 비용 발생 요인

- 보훈명예수당 1인당 월 2만원 인상(15만원에서 17만원으로 상향)

2. 비용 추계결과

가. 추계의 전제

○ 보훈명예수당

- 2025년 3월부터 인상분 적용
- 2025년 연간 추가 소요예산 : $20,000\text{원} \times 3,800\text{명} \times 10\text{월} = 760,000,000\text{원}$
- 2025년 총예산: 7,600,000,000원
 - $150,000\text{원} \times 3,800\text{명} \times 2\text{월} = 1,140,000,000\text{원}$
 - $170,000\text{원} \times 3,800\text{명} \times 10\text{월} = 6,460,000,000\text{원}$
- 2026년 총예산: $170,000\text{원} \times 3,800\text{명} \times 12\text{월} = 7,752,000,000\text{원}$

나. 추계결과

(단위: 백만원)

구 분	2025년	2026년	2027년	2028년	2029년
보훈명예수당	7,600	7,752	7,752	7,752	7,752

다. 재원조달방안: 2025년 예산에 일반회계로 편성(시비 100%)

3. 제도개선 등 기타사항

- 지자체 보훈사업은 보건복지부 협의대상에서 제외

4. 작성자: 복지국 복지정책과장(최현숙)

〈 연도별 비용 추계표 〉

(단위: 백만원)

구 분	1차연도	2차연도	3차연도	4차연도	5차연도	계
세 입						
세 출	7,600	7,752	7,752	7,752	7,752	38,608
보훈명예수당	7,600	7,752	7,752	7,752	7,752	38,608
재원 조달						
의존 재원	소 계					
	보조금					
	지방교부세					
자체 수입	소 계	7,600	7,752	7,752	7,752	38,608
	지방세	3,800	3,876	3,876	3,876	19,304
	세외수입	3,800	3,876	3,876	3,876	19,304
지방채						
기 금						
공기업 특별회계						
기 타 (채무부담, 민자 등)						